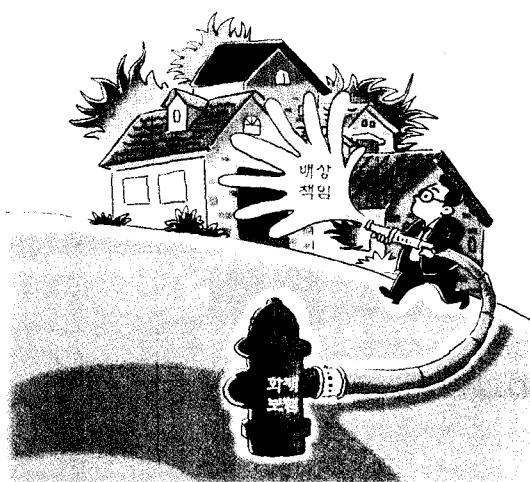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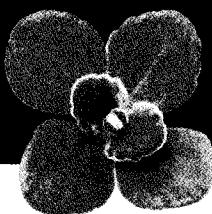


2011년 3월 31일 이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물은?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2011년 3월 31일 이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와 타인의 신체상 손해(부상, 후유장해, 사망)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새로 지정된 특수건물]

업 종	면적기준
공유건물(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전자오락실, PC방,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하나의 건물에 포함된 각 영업장면적 합계 2,000㎡ 이상
목욕장	영업장면적 2,000㎡ 이상
영화상영관	영업장면적 2,000㎡ 이상
지하철역사	연면적 3,000㎡ 이상
옥내사격장	없음.

새로 지정된 특수건물은 KFPA(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안전점검을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손해보험 협회에 따르면 2009년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아파트가 27%이며, 개인주택 69%, 연립주택은 71%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보험료가 연간 90만원 수준이지만 가입률이 96%에 이르고, 일본도 8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PC방, 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국의 17만 7천여 곳 중에 화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1.9% 수준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어, 우리나라는 이슈화된 사고의 경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화자에 대한 책임 높아져]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화재 시 실화자에 대한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화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과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법률 개정 이후 이후부터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업체나 개인이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세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일단 보상한 뒤에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은 세입자가 져야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보험가액(건물의 가치)을 초과해서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보험가액이 2억원이라면 4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억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고지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의 위험급수와 업종의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